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37
----------	-----

2023. 10. 12.

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9. 27. 노애자 의원 등 10명

나. 상정의결

-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0. 12.)

“원안가결”

## 2. 제안이유(제안설명: 대표발의자 노애자 의원)

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 ‘23. 8. 16.개정, ‘24. 2. 17.시행)에 지방의회 의장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·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 위임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(안 제11조의2 신설).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: 해당 없음

## 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구경남)

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) 제12조제2항이 신설되어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·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함으로써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임.
- 법 제4조<sup>1)</sup>의 대상은 제외하고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의 수리 혹은 각하를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임. 주민조례청구는 법 제5조제1항제3호<sup>2)</sup>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주민<sup>3)</sup>이 연대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음.
- 청구 및 명부열람과 이의신청 이후에 의장이 해당 청구를 수리한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내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이 발의되는 것임.

###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

- 1) 제4조(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.
  - 1.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  - 2.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부담금을 부과·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
  - 3.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
  - 4.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
- 2) 제5조(주민조례청구 요건)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.
  - 1.~2. (생략)
  - 3.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
  - 4.~6. (생략)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.  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3) 2023.1.6. 강남구 기준: 4,488명

다만, 현재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은 처리기한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혼선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.

개정 전	개정 후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</b></p> <p>제12조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</b> [법률 제19633호, 2023. 8. 16, 일부개정]</p> <p>제12조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<u>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</u>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 &lt;신설 2023.8.16.&gt;</p> <p>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<b>3개월 이내</b></p> <p>2.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이 끝난 날)부터 <b>3개월 이내</b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[시행일: 2024. 2. 17.] 제12조</p>

- 다음은 현재 주민조례청구 행정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빨간 점선 8번의 절차에는 처리기한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.



○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1조의2(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) 규정은 신설되는 조문으로 법의 개정에 따라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의 처리기간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각각 최대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도 법과 동일하게 각각 최대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기간이 적정한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안 부칙에서는 법과 동일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임.

○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임. 또한 법 시행 전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는 바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하겠음.

**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**

**7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**

**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**

**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**

**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**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노애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9. 27.

발 의 자: 노애자·황영각·오온누리·  
안지연·김광심·김현정·  
이도희·박다미·이동호·  
복진경 의원(이상10인)

### 1. 제안이유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‘23.8.16.개정, ’24.2.17.시행)에 지방의회 의장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·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위임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(안 제11조의2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)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: 3개월 이내
2.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: 3개월 이내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11조의2(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)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/u></p> <p><u>1.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:</u> <u>3개월 이내</u></p> <p><u>2.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:</u> <u>3개월 이내</u></p>